#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

2024. 06. 18. 주택공간위원회

#### I. 심사경과

1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. 5. 27. 최재란 의원 발의

2. 회부일자: 2024. 5. 30.

3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24회 정례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(2024. 6. 18. 상정·의결)

## Ⅱ. 제안설명 요지 (최재란 의원)

#### 1. 제안이유

- 빅데이터 사회의 도래와 함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, 작은 데이터가 모인 큰 정보가 중요해진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고 함께 활용하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
-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의 설계와 분석 자료로 사용하는 조합원들의 개 인정보뿐 아니라, 조합원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, 공유를 통해 조 합원의 혜택과 이익을 높여가는 플랫폼임
- 이에 조합원의 보건의료, 교육, 교통, 소비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조합원 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데이터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데이터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 정함(안 제4조)
- 나. 데이터 보안에 대한 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5조)
- 다. 시장이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라. 시장이 데이터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, 제8조)
- 바. 시장이 데이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(안 제9조)

## Ⅲ. 검토보고 요지 (오정균 수석전문위원)

#### 가. 제안경위

- 이 제정조례안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·운영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4년 5월 27일 최재란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- 현행 정부 및 서울시의 정책과 제도(검토보고서 붙임2 및 붙임3 참고)는 '공 공데이터의 활용'과 '정보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' 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, 시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축적한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정책 및 제도적 기반은 거의 없는 실정임에 따라 이 제정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됨.

## 나. 데이터협동조합 현황

○ 집행기관에 따르면, 서울시 내 협동조합1)은 총 4,195개(공정경제담당관 소관)

- 이며, 조합원의 데이터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·운영중인 협동조합은 1개소(디지털정책관 확인결과) 뿐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, 조합원은 총 2명이며 데이터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한 전문성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됨.
- 따라서,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·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조합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 및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
#### < 서울시 내 협동조합 중 데이터 활용 협동조합 사례 >

구분	협동조합명	목적	주요사업	비고
일 반 협동 조합	한국대중 예술댄서 협동조합 <sup>2)</sup>	조합원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댄서 지원	<ul> <li>▶ 댄서 예술활동 증빙 DB 구축사업</li> <li>▶ 댄서 구인,구직 활용 네트워크 구축사업</li> <li>▶ 경연, 강연, 교육, 학술회 등 해당 분야의 문화예술발전 사업</li> <li>▶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, 교육,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</li> </ul>	- 조합원 총 2명 - 데이터구축 및 활용 관련 전문성 부재

<sup>※</sup> 디지털정책관 제출자료 재각색

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○ 이 제정조례안은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.

주 요 내 용		
<b>제1조</b> (목적)	·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, 운영 및 육성을 지원	
<b>제2조</b> (정의)	·데이터, 데이터협동조합, 조합원 등 용어 정의	

<sup>1)</sup> **협동조합이란**, ①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과 구매, 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조직(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)이며, ②공동으로 소유되고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을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(국제협동조합연맹)으로 정의할 수 있음.

<sup>2) &#</sup>x27;한국대중예술댄서 협동조합'은 성동구에 소재하며, 협동조합 인원은 총 2명임. 댄스관련 분야 종사자 간 상호 연결을 목적으로 구직·댄스콘텐츠 공유 등 데이터를 취합하여 DB화하려고 하였으나, 설립 (2022.04.02.)이후 현재까지 데이터 관련 문제(조합원 2명, 데이터 관련 전문성 결여 등)로 인하여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.

주 요 내 용			
제3조 (다른 조례와의 관계)	·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함을 규정		
<b>제4조</b> (시장의책무)	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.     「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」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     교육과 홍보를 통한 데이터협동조합의 중요성과 가치 확산		
제5조(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)	· 데이터 사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, 조합원의 데이터 소유권 보호 방안,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방안 규정		
<b>제6조</b> (설립 및 운영 지원)	·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가능 규정		
<b>제7조</b> (교육훈련 지원)	·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가능 규정		
제8조 (홍보)	·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 지원가능한 사항 규정		
제9조 (협력체계 구축)	·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 규정		
<b>제10조</b> (시행규칙)	· 조례 시행을 위한 규칙제정 근거 명시		
부칙	· 시행일(공포 즉시 시행)		

#### 라. 주요 조문별 검토

#### (1) 정의(안 제2조)

- **안 제2조**는 "데이터", "데이터협동조합", "조합원" 등에 대해 정의하면서, 일부 관련 법률<sup>3)</sup>을 인용하였음.
- 안 제2조제1호는 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 제2 조제1호를 인용하여 "데이터"의 의미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는데, 데이터 답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개인정보 등을 활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정의의 범주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겠음.
- 안 제2조제2호에서는 데이터협동조합을 「협동조합 기본법」(이하 "협동

<sup>3) 「</sup>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」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

조합법") 상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,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.

#### < 수정의견 >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	<b>제2조</b> (정의) (제정안과 같음)
음과 같다.	
1. "데이터"란 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	1
관한 기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<u>데이터를 말</u>	<u>데이터 중</u>
<u>한다.</u>	<u>조합원의 테이터를 말한다.</u>
2. "데이터협동조합"이란 <u>조합원이 제공한 데이터</u>	2 <u>「협동조합 기본법」제2</u>
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, 사회적, 문화	조제1호부터 제4호 중 조합원이 제공한 데이
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설립한 「협동	터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, 사회적,
조합 기본법」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	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설립한
합회(사회적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	<u>것을 말한다.</u>
포함한다)를 말한다.	
3. "조합원"이란 데이터협동조합에 데이터를 제공	3. (제정안과 같음)
하고, 협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	
단체를 말한다.	

# (3) 다른 **조례와의 관계**(안 제3조)

○ **안 제3조제2항**은 '데이터협동조합 육성'과 관련된 사항을 이 제정조례안 이외의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할 때는 이 제정조례안에 부합토록 하고 있는 데,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이 중복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수정안을 제시함.

#### < 수정의견 >

제 정 안	수 정 안
<b>제3조</b> (다른 조례와의 관계) <u>①</u> 데이터협동조합 육	<b>제3조</b> (다른 조례와의 관계) <b>(제정안과 같음)</b>
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	
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	
하는 바에 따른다.	
② 데이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·규칙	<u>&lt;삭 제&gt;</u>
으로 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여야 한다.	

#### (4) 시장의 책무(안 제4조)

- **안 제4조**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과 함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한 것으로 데이터협동조합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해됨.
- 안 제4조제2항에서는 「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」(이하 "협동조합조례")에 따라 시장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, 현행 협동조합조례 제5조에 따르면 '협동조합 기본계획(3년마다 수립)' 및 '연도별 시행계획'을 수립토록 하고 있음.(검토보고서 붙임5 참고)
- 따라서, 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계획수립 및 실행체계에 대한 현행 조례가 운용 중인 상황에서, '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'을 별도로 수립·시행하게 될 경우 정책의 중복, 수립기간 상이 시 실행 과 정에서의 혼란 등이 우려되는바,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음.

#### < 수정의견 >

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데이터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	제4조(시장의 책무) (제정안과 같음)
②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<u>「서울특별</u> 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」에 따라 종합 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②
③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 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	③ (제정안과 같음)

○ 참고로 집행기관(빅데이터담당관)에서는 데이터협동조합을 육성하여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이 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, '현행 협동조합 조례를 통해 이 제정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'는 의견을 제시했으며, 이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으로부터 '협동 조합기본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이 제정조례안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'는 내용과 함께 '디지털 기술분야별로 무분별한 조례 제정 가능성'을 우려하는 의견4〉도 제출되었음.

#### **(5) 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**(안 제5조)

- 안 제5조에서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, 안 제5조제2항은 조합원의 데이터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하여,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협동조합의 신뢰성을 높이기위한 것으로 이해됨.
- 다만 '동의 절차'와 '투명한 공개'의 의무만 규정한 채,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.
- **안 제5조제3항**에서는 조합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, 정기적으로 보안 점검토록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데이터 유출 등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 것으로 이해됨.
- 다만, '최신 보안 기술'과 '데이터 보안<sup>5</sup>)을 위한 점검 시기' 등이 구체적 이지 않으므로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

<sup>4)「</sup>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」 입법예고 기간중 시민 의견이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됨.(2024.6.6.)

<sup>5)</sup> 데이터 보안의 방법에는 데이터의 변경·훼손·유출 및 파괴 등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 등이 있음

# 터협동조합의 책무를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# < 수정의견 >

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) ① 데이터협동조합 은 데이터 사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 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5조(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) ① (제정안과 같음)
② 데이터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데이터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<u>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</u>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데이터 사용 내역을 투 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.	
<신 설>	1.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,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	가. 데이터 사용 목적나.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범위다. 데이터 보관 기간라. 데이터 제공 및 공유 대상마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
<u>&lt;신 설&gt;</u>	2.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 내역을 조합원 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 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	가. 정기적으로 데이터 사용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조합원에게 제공 나. 데이터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플
	랫폼 구축 <u>다. 데이터 사용 관련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공지</u> <u>및 조치</u> 라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
③ 데이터협동조합은 <u>조합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</u> 보호하기 위하여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고 <u>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</u> 하여야 한다.	

## (6) 설립 및 운영 지원·교육훈련 지원·홍보(안 제6조~제8조)

-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장에게 ▲ 데이터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(안 제6조) ▲ 교육훈련 지원(안 제7조) ▲ 홍보(안 제8조)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6조에서는 ▲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(제1항), ▲ 데이터 관리 및 보안 기술, 데이터 활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컨설팅도 지원(제2항)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시장이 데이터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하여, 재정 상황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.

## 마. 종합의견

- 이 제정조례안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·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합원이 축적한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인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의 제정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협동조합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에서 데이터협동조합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,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'협동조합 기본계획'과 연계하여 수립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하겠음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V. 토론요지: 없음

#### Ⅵ. 수정안의 요지

- 데이터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고, 인용한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명 시함(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)
-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함
-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·시행 시, 「서울 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」에 따른 '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'과 연계하도록 함(안 제4조제2항)
- 데이터 사용에 대한 동의절차 및 사용내역 공개의 세부기준을 신설함(안 제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신설)
- 조합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계법령을 준수토록 수정함(안 제5조제3항)

Ⅷ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Ⅷ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#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관련 번 호 1862

제안일자: 2024. 6. 18. 제 안 자: 주택공간위원장

#### 1. 수정이유

○ 조합원의 개인정보 등을 활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, 정책의 중복 및 사업추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협동조합 관련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을 도모하며, 협동조합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조합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준수토록 하는 등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데이터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고, 인용한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명 시함(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)
-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함
-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·시행 시, 「서울 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」에 따른 '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'과 연계하도록 함(안 제4조제2항)
- 데이터 사용에 대한 동의절차 및 사용내역 공개의 세부기준을 신설함(안 제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신설)
- 조합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계법령을 준수토록 수정함(안 제5조제3항)

#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호 중 "따른"을 "따른 데이터 중 조합원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이란"을 "이란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중"으로, "「협동조합 기본법」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(사회적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)를"을 "협동조합을"로 한다.

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데이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안 제4조제2항 중 "「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」에 따라"를 "「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5조에 따른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"로, "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"를 "수립·시행할 수 있다"로 한다.

안 제5조제2항 중 "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데이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"를 "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"로 하고, 같은 항 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 하고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"를 "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저작권법」,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을 준수"로 한다.

- 1.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,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가. 데이터 사용 목적
  - 나.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범위
  - 다. 데이터 보관 기간
  - 라. 데이터 제공 및 공유 대상
  - 마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
- 2.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 내역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가. 정기적으로 데이터 사용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조합원에게 제공
  - 나. 데이터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
  - 다. 데이터 사용 관련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공지 및 조치
  - 라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

안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안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##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정 아 수 정 아 제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(제정안과 같음)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데이터"란 「데이터 산업진흥 1. ----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제 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 ----- 따른 데이터 중 조 다. 합워의 -----2. "데이터협동조합"이라 조합원 2. ----이란 「협동조 합 기본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 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, 사회적, 문 4호 중 -----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 설립한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----- 협동조합을----. 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 합회(사회적 협동조합, 사회적협 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)를 말 하다 3. (생략) 3. (제정안과 같음) 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데이 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데이터 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은 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데이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| <삭 제>

사항을 조례·규칙으로 정할 때에

는 이 조례에 부합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(생 략)

②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」에따라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### ③ (생략)

- 제5조(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) ① (생 략)
  - ② 데이터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데이터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데이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(제정안과 같
승)
②
「서울특별시 협
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5조
에 따른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
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
<u>수립·시행할 수 있다</u> .
③ (제정안과 같음)
제5조(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) ①
(제정안과 같음)
②
<u></u> 단
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
1.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
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
련하여야 하며, 다음 각 목의 내
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가. 데이터 사용 목적
나.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범위
다. 데이터 보관 기간
라. 데이터 제공 및 공유 대상
마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

<<u>신</u> 설>

③ 데이터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고 정기 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교육훈련 지원) <u>①</u> (생 략)

제8조(홍보) ① (생 략)

2.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 내역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 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 을 준수하여야 한다.

가. 정기적으로 데이터 사용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조합원에게 제공

나. 데이터 사용 내역을 열람할
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
 다. 데이터 사용 관련 문제 발생
 시 즉각적인 공지 및 조치
 라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

③ -----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저작권법」,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을 준수---.

제7조(교육훈련 지원) (제정안 제1 항과 같음)

제8조(홍보) (제정안 제1항과 같음)

####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권리 강화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데이터"란 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조합원의 데이터를 말한다.
  - 2. "데이터협동조합"이란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중 조합원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.
  - 3. "조합원"이란 데이터협동조합에 데이터를 제공하고, 협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데이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.
- 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데이터협동 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데이터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 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

- 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」제5조에 따른 협동 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 행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) ①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.
  - ② 데이터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데이터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- 1.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,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  - 가. 데이터 사용 목적
    - 나.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범위
    - 다. 데이터 보관 기간
    - 라. 데이터 제공 및 공유 대상
    - 마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
    - 2.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 내역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- 가. 정기적으로 데이터 사용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조합원에게 제공
    - 나. 데이터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
    - 다. 데이터 사용 관련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공지 및 조치

- 라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
- ③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「개인정보 보호법」,「저작권법」,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6조(설립 및 운영 지원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및 보안 기술, 데이터 활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7조(교육훈련 지원)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,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시민 및 데이터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데이터협동조합 이해 증진
  - 2.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, 데이터 관련 법률, 기술,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
  - 3. 데이터 소유권, 데이터 활용의 이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전문가포럼 및 워크숍 개최
- 제8조(홍보)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이해증 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.
  - 1. 데이터협동조합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
  - 2. 전문가포럼,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
  - 3. 그 밖에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사항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, 단체,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 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